

경운대학교 계약학과운영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학과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탁산업체 등의 임직원 및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처장 및 해당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업체 등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선발기준 및 입학사정
3. 장학금 지급 및 교육경비의 부담
4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회사 보유 시설·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
6. 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
7. 산업체 등의 시설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8. 대학과 회사의 상호 지원·협력 사항
9. 계약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
10. 기타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의결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